

인천광역시서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http://www.seo.incheon.kr/>

선	기관위원장
람	

제1295호 2017. 9. 4(월)

차 례

고 시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114호 가재울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 지형도면 고시 ----- 1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115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고시 ----- 4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116호 회화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사업시행계획서 고시 ---- 5

공 고

- 인천광역시서구 보건소 공고 제51호 인천광역시 서구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11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1176호 인천도시관리계획(시설:녹지) 결정(변경) 입안(안) 열람·공고 ----- 25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1185호 현무체육공원 조성공사 편입토지 손실보상계획 열람공고 ----- 27

인천광역시서구청시 제2017-114호

가재울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변경) 지정, 지형도면 고시

인천광역시고시 제2017-113호(2017.5.15.)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한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354번지 일원 가재울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라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경미한 변경) 지정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인천광역시 서구청 도시재생경관과(☎032-560-4768)에 갖춰놓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7. 9. 4.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정비사업의 명칭(변경 없음): 가재울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2. 정비구역 및 그 면적(변경 없음)
 - 정비구역 지정조서(변경 없음)

구분	사업의 구분	구역의 명칭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기정	주거환경관리사업	가재울마을	서구 가좌동 354번지 일원	80,579.5	-	80,579.5	-

3. 정비계획(변경)
 - 1) 용도지역·지구 결정 조서(변경 없음)
 -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3)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변경)

○ 건축분야(변경)

[기 정]

구분	시설명		위 치	면적(㎡)	비 고
기정	공동 이용 시설	커뮤니티 센터	서구 가좌4동 372, 409-1, 409-2번지	449.9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동이용시설을 신축하여 세부시설을 활용한 마을 주민간 화합도모 및 주민편의 증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층: 경로당, 카페 및 식당 - 2층: 주민공동체 공간(주민회의실 등) - 3층: 어린이 도서관, 청소년 독서실 - 옥상: 옥상 정원(텃밭) ◦친환경적이고 유지관리비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건축계획 수립 ◦주민협의체 운영 예정

[변 경]

구분	시설명		위 치	면적(㎡)	비 고
변경	공동 이용 시설	커뮤니티 센터	서구 가좌동 375-5번지 (위치 변경)	338.8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동이용시설을 신축하여 세부시설을 활용한 마을 주민간 화합도모 및 주민편의 증진 ◦친환경적이고 유지관리비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건축계획 수립 ◦주민협의체 운영 예정

○ 기타분야(변경없음)

- 4) 지역특성, 골목길 등 지역자원 발굴 및 관계성 회복을 위한 주민공동체 활성화 방안(변경 없음)
- 5) 기존 건축물의 정비, 개량에 관한 계획(변경)

[기 정]

구역구분		위 치	정비개량계획(동)					비고
명 칭	면적(㎡)		계	존치	개수	철거후 신축	철거 이주	
가재울마을 주거환경관리	80,579.5㎡	서구 가좌동 354번지 일원	285	282	3	3	3	-

[변 경]

구역구분		위 치	정비개량계획(동)					비고
명 칭	면적(㎡)		계	존치	개수	철거후 신축	철거 이주	
가재울마을 주거환경관리	80,579.5㎡	서구 가좌동 354번지 일원	285	284	1	1	1	-

- 6)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계획(변경 없음)
- 7)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및 시행예정 시기(변경 없음)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 각호의 사항에 관한 계획 (변경 없음)

4. 고시도면 : 별첨(비치된 장소의 고시도면과 같음 : 관보게재 생략)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17-115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4항, 제24조 제1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변경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 09. 04.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부여·변경 도로명주소 : 인천 서구 검단로 809-188 외 16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부여(변경)사유	도 로 명 고 시 일	도 로 명 부 여 사유
		별도 열람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서구청 토지정보과(☎560-4830)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7. 09. 01일자로 고시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 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 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 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인천광역시 서구 고시 제2017-116호

회화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사업시행계획서 고시

인천광역시고시 제2017-112호(2017.05.15.)로 정비구역 지정된 회화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에 대한 사업시행계획서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3항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서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서구 도시재생경관과에 비치하고 일반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032-560-4769)

2017. 9. 4.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주거환경관리사업
 - 명 칭 : 회화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2. 정비구역의 위치 및 그 면적
 - 위 치 : 인천광역시 서구 신현동 133-10번지 일원
 - 면 적 : 64,600㎡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인천광역시서구청장
 - 주 소 :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
4. 정비사업의 시행기간 : 2017.09.04. ~ 2019.12.31.
5.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 도시기반시설 : 서구청장
 - 주 택 개 량 : 토지 등 소유자

6. 사업시행계획 고시일 : 2017.09.04.

7.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적(m ²)	구성비(%)	비 고
합 계		64,600.0	100.0	
주택용지		51,610.8	79.9	
문화재보호구역		676.0	1.0	
소 계		1,461.0	2.2	
공동이용 시설	커뮤니티센터	609.0	0.9	1개소
	주민휴게시설	810.0	1.2	3개소
	주차장	42.0	0.1	1개소
소 계		11,528.2	17.8	
정비기반시 설	도로	도시계획도로	5,924.1	9.2
		현황도로	5,258.1	8.1
	주차장	도시계획시설	346.0	0.5

8.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설치계획

가.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1) 건축분야

구분	시설명	위 치	면적(m ²)	비고
신설	공동 이용 시설	서구 신현동 133-3, 133-10, 133-11번지	60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준공 상태로 방치되었던 오성연립을 철거 후 신축하여 주민공동이용시설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층: 주민공동체 공간(카페, 식당) - 2층: 공동보육공간(공동육아방, 공부방) - 3층: 주민공동체 공간(공동 작업장) - 옥상: 옥상 정원(텃밭) ◦ 친환경적이고 유지관리비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건축 계획 수립

2) 기타분야

사업명	계 획 내 용		비 고
	위 치	면적(m ²)/개소	
회화나무 주변쉼터 환경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현동 131-16 일원 어린이 놀이터 재배치 일부 식재 및 조경제거 파고라 제거 후 운동시설 조성 	734m ²	2018년 ~ 2019년
골목길 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골목길 테마에 적합한 도로패턴 포장 노후 담장 정비로 안전사고 예방 	B = 3~8m L = 940m A = 2,700m ²	2018년 ~ 2019년
주민휴게시설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현동 162-2, 161-2, 172-5, 172-2 쌈지공원(2개소, 48m², 30m²) 및 주차장(1개소, 40m², 3면) 조성 	3개소	2017년
CCTV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구역 내 우범지대 및 사각지대 등의 안전 취약구간을 확인하여 CCTV 추가 설치 	10개소	완료
가로등 및 보안등 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로등, 보안등의 정비 및 추가 설치를 통해 밝은 마을 이미지 조성 	9개소	완료
가로변 환경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마을 가로경관 개선 	-	2017년 ~ 2019년

※ 주 : 주민협의 결과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 사업시행

9. 건축물의 높이 및 용적률 등에 관한 계획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구역 전체	건축물 용도	허용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불허용도 이외의 용도 단,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외,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제외
		불허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허용하지 않는 용도 「학교보건법」 등 기타 법령에 의해 당해 토지에서 불허되는 용도
	건폐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시계획조례에 따름 (60% 이하) 	
	용적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시계획조례에 따름 (250% 이하) 	
	높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련법령에 따름(건축법 제60조, 61조 및 인천광역시 건축조례 적용) 회화나무 주변구역은 『문화재보호법』에 따름 	

※ 허용용도별 상세조건은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를 따름

10. 시행규정

가. 비용부담 및 회계에 관한 사항

- 본 정비구역 사업은 국비 등의 정부보조금 및 구비, 시비 등의 지방비로 충당
- 주택개량자금은 주민자체 부담

나. 토지 및 건축물에 관한 권리의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의거 감정평가업자 3인을 선정하여 감정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협의에 의한 취득 및 보상을 원칙으로 함.
- 다만, 협이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용수용함.

11. 정비사업비

가. 재원조달계획

- 사업 시행 예정시기 : 2017년 ~ 2019년
- 연차별 재원조달계획

구 분	재원조달계획(백만원)							비고
	합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합계	5,024	178	477.5	897.5	1,022	1,045	1,404	
국비	2,369		50	500	444	508	867	
시비	2,389.5		427.5	350	538	537	537	
구비	265.5	178		47.5	40			
사업 내용		정비계획 수립 용역비	오성연립 보상	오성연립 보상, 안전시설물 개선	오성연립 보상, 주민공동 이용시설 실시설계	주민공동 이용시설 건립, 기반시설 정비	기반시설 정비	

12. 수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가. 토지

연번	동명	지번	지목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주소	성명	권리의 종류	
1	신현동	133-3	대	223	223	오성 건설 주식 회사	인천시 서구 신현동 86-9	한봉 남 외2	인천시서구새오개로68 번길 15-49,가동103호(오성 연립)	가처분	
								인천 광역시 서구	인천시 서구 서곶로 307	압류	
								차민 주	인천시서구송학로506 번안길19-44, 1동402호(동명빌라)	근저당	
2	신현동	133-1 0	대	40. 7	40.7	박춘 연	강원도화천군화천 읍상승로38-5 화천관광안내소 (시외버스터미널내)	이균 형	서울 강북구 솔샘로 174, 135동 702호 (미아동,SK북한산시티 아파트)	근저당	
								권태 욱	경기도 부천시 부일로 525, 502호 (심곡동,동영피렌체 아파트)	근저당	

나. 건축물

연번	동명	지번	호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1	신현동	133-3	지하1 호	24.7 78	24.7 78	미상					건물기 능없음
2	신현동	133-3	지하2 호	24.7 78	24.7 78	미상					
3	신현동	133-3	지하3 호	24.7 78	24.7 78	미상					
4	신현동	133-3	101 호	24.7 78	24.7 78	미상		강기석	인천시 서구 새오개로68번길 15-49,가동101호(,오성 연립)	점유	
5	신현동	133-3	102 호	24.7 78	24.7 78	미상					
6	신현동	133-3	103 호	24.7 78	24.7 78	미상		한봉남	인천시 서구 새오개로68번길 15-49,가동103호(오성연 립)	점유	
7	신현동	133-3	201 호	24.7 78	24.7 78	미상		유두형	인천시 서구 새오개로68번길 15-49,가동201호(오성연 립)	점유	
8	신현동	133-3	202 호	24.7 77	24.7 77	미상		안기훈	인천 부평구 부평북로 463 삼산주공 미래타운아파트 310동 1303호	점유	
9	신현동	133-3	203 호	24.7 77	24.7 77	미상					
10	신현동	133-10	지하1 호	19.8 00	19.8 00	박춘연	강원도 화천군 화천읍 상승로 38-5 화천관광안내소 (시외버스터미널 내)	민영자	서울시 종로구 옥인길 82, 122호(옥인동, 옥인연립)	근저당	
								최헌준	전라남도 목포시 양율로7번길 9-8(죽교동)	근저당	
								성남 세무서	경기 성남시 수정구 희망로 480	압류	
11	신현동	133-10	203 호	20.9 00	20.9 00	박춘연	강원도 화천군 화천읍 상승로 38-5 화천관광안내소 (시외버스터미널 내)	정의준	서울시 동작구 사당동 105 극동아파트 105동 304호	근저당	
								국민건 강 보험공 단	서울 동작구 노량진로 74 유한양행빌딩 14층	압류	
								동작 구청	서울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	압류	
								용인 시청	경기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217 차량등록사업소	압류	
								민영자	서울시 종로구 옥인길 82, 122호(옥인동, 옥인연립)	근저당	
								남기현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425(상대원동)	근저당	
								성남 세무서	경기 성남시 수정구 희망로 480	압류	
12	신현동	133-11	지하2 호	21.7 80	21.7 80	김석구	인천 서구 탁옥로 37, 8층호(심곡동, 우리타워)	김진원	인천시 연수구 헤돋이로 84번길 29, 303동 901호(송도동,풍림아이 원3단지)	근저당	

도시재생경관과(☎032-560-4769)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보건소 공고 제2017-51호

인천광역시 서구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 9. 1.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개정이유

- 2017년 5월 30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시행에 따라 ‘정신질환자’ 용어정의 변경 및 ‘정신건강증진센터’ 명칭을 ‘정신건강복지센터’로 변경하여 정신건강증진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질환자’에 대한 용어정의 변경
- ‘정신건강증진센터’ 명칭을 ‘정신건강복지센터’로 명칭 변경
- ‘정신건강복지센터’ 명칭 변경에 따른 조문 정비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7년 9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서구(참조: 건강증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 또는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우편 또는 팩스

1) 주소 : (우22726) 인천광역시 서구 탁옥로 39 서구보건소 건강증진과

2) 전화/팩스 : 032-560-5062/ 032-560-2803

4. 참고자료

- 인천광역시 서구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부.

인천광역시 서구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2017년 5월 30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시행에 따라 ‘정신질환자’ 용어정의 변경 및 ‘정신건강증진센터’ 명칭을 ‘정신건강복지센터’로 변경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정신질환자’에 대한 용어정의 변경
- ‘정신건강증진센터’ 명칭을 ‘정신건강복지센터’로 명칭 변경

3. 참고사항

- 가. 개 정 안 : “별지 참조”
- 나. 신·구조문대비표 : “별지 참조”
- 다. 예 산 수 반 사 항 : “해당 없음”
- 라. 관계 법령 발췌 : “별지 참조”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서구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 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 서구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인천광역시 서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정신보건법」 제4조, 제13조 및 제13조의2에 따라 정신보건사업”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1조, 제12조 및 제15조에 따라 정신건강증진사업”으로, “정신건강증진센터”를 “정신건강복지센터”로,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제2조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정신건강복지센터”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이라 한다) 제3조제3호에 따라 설치된 기관을 말한다.

2. “정신질환자”란 정신건강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제1항 중 “정신건강증진센터의”를 “정신건강복지센터의”로, “정신건강증진센터(이하 “정신건강증진센터”)”를 “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정신건

강복지센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정신건강증진센터”를 “정신건강복지센터”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신건강증진센터”를 “정신건강복지센터”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정신보건관련”을 “정신건강증진관련”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정신보건사업”을 “정신건강증진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예방·정신건강증진·편견해소”를 “예방·정신건강증진·편견 해소”로 하며, 같은 조 제8호 중 “정신보건사업”을 “정신건강증진사업”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정신건강증진센터”를 “정신건강복지센터”로, “국·공립 정신의료기관 및 「정신보건법 시행령」 제3조의2”를 “국공립 정신의료기관 및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 시행령」 제10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제5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5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해당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신건강증진센터의 운영을 위탁받고자하는”을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관련분야”를 “관련 분야”로 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1호 중 “정신건강증진센터”를 각각 “정신건강복지센터”로, 같은 호 중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를 “주의의무”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제4조에서 규정한”을 “제4조에 따라”로, “없다.”를 “없음”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관계법령”을 “관계 법령”으로, “이행하여야 한다.”를 “이행”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정신건강증진센터”를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시행하여야 한다.”를 “시행”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정신건강증진센터”를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없다.”를 “없음”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배상하여야 한다.”를 “배상”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정신건강증진센터”를 “정신건강복지센터”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년”을 “연”으로 한다.

제13조 중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신보건법」 제4조, 제13조 및 제13조의2에 따라 정신보건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서구 정신건강증진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1조, 제12조 및 제15조에 따라 정신건강증진사업-- 정신건강복지센터-- 필요-----.</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정신건강증진센터"란 정신질환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p> <p>2. "정신질환자"라 함은 정신병(기질적 정신병을 포함한다)·인격장애·알코올 및 약물중독 기타 비정신병적 정신장애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p>	<p>제2조(정의) -----.</p> <p>1. "정신건강복지센터"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이라 한다) 제3조제3호에 따라 설치된 기관을 말한다.</p> <p>2. "정신질환자"란 정신건강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p>
<p>제3조(명칭 및 위치) ① 정신건강증진센터의 명칭은 인천광역시 서구 정신건강증진센터(이하 "정신건강증진센터"라 한다)로</p>	<p>제3조(명칭 및 위치) ① 정신건강복지센터의 ----- -- 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정신건강복지센터"-----</p>

하되, 필요한 경우 별도의 명칭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정신건강증진센터의 위치는 인천광역시 서구 관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업무) 정신건강증진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정신보건관련 자원 파악을 위한 지역사회 진단 및 조사 연구
2. ~ 4. (생략)
5. 지역 내 정신보건사업에 대한 자문
6. (생략)
7. 정신질환 예방·정신건강증진·편견해소 홍보 사업
8. 그 밖에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신보건사업

제5조(운영의 위탁) ① 구청장은 정신건강증진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국·공립 정신의료기관 및 「정신보건법 시행령」 제3조의2에서 정한 기관이나 단체에게 운영을

-----.

② 정신건강복지센터-----

-----.

제4조(업무) 정신건강복지센터-----
-----.

1. 정신건강증진관련 -----

--
2. ~ 4. (현행과 같음)
5. ----- 정신건강증진사업-----

6. (현행과 같음)
7. ----- 예방·정신건강증진·편견 해소 -----
8. -----

----- 정신건강증진사업

제5조(운영의 위탁) ① -----
정신건강복지센터-----
----- 국공립 정신의료기관 및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 시행령」 제10

위탁할 수 있다.

② (생략)

③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
되, 구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
고 인정할 때에는 1회에 한하여
재 위탁 할 수 있다.

<신설>

제6조(수탁자의 선정기준) 구청장
은 정신건강증진센터의 운영을
위탁받고자하는 기관이나 단체
또는 개인(이하 “수탁자”라 한
다)을 선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
로 검토하여 선정기준을 마련해
야 한다.

1. (생략)

2. 위탁사무 관련분야에 대한

조-----.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
년으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공유
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5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
는 갱신할 때마다 해당 관리위
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
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
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
마다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6조(수탁자의 선정기준) -----

-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

-----.

1. (현행과 같음)

2. ----- 관련 분야-----

전문성 확보여부 및 사무처리,
사업실적

3. 4. (생략)

제8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정신건강증진센터에 대하여 다
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의무를 성
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수탁자는 정신건강증진센터
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
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정신건
강증진센터 운영·관리에 있
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2. 수탁자는 운영비와 수탁자산
을 제4조에서 규정한 업무 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수탁자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
할 수 없다.

3.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위탁
협약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4. 수탁자는 정신건강증진센터
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예산
·결산 보고서 및 사업계획서

3. 4. (현행과 같음)

제8조(수탁자의 의무) -----
정신건강복지센터-----

-----.

1. ----- 정신건강복지센터--

----- 정신건
강복지센터 -----
----- 주의
의무

2. -----
- 제4조에 따라 -----

----- 없음

3. ----- 관계 법령 -----

----- 이행

4. ----- 정신건강복지센터--

<p>장부 및 서류 등을 <u>년 2회</u> 이상 점검한다.</p> <p>② (생략)</p> <p>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 에 <u>관하여 필요한</u> 사항은 규칙 으로 정한다.</p>	<p>----- <u>연</u> ----- -----.</p> <p>② (현행과 같음)</p> <p>제13조(시행규칙) ----- - <u>필요</u>----- -----.</p>
---	--

○ 관계법령 발췌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신질환자"란 망상, 환각, 사고(思考)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정신건강증진사업"이란 정신건강 관련 교육·상담, 정신질환의 예방·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복지·교육·주거·근로 환경의 개선 등을 통하여 국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는 사업을 말한다.
3. "정신건강복지센터"란 정신건강증진시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이하 "사회복지시설"이라 한다), 학교 및 사업장과 연계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사회에서의 정신건강증진사업 및 제33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사업(이하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이라 한다)을 하는 다음 각 목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 가.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기관
 - 나. 제15조제6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제15조(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필요한 지역에서의 제12조제1항에 따른 소관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제공 및 연계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는 관할 구역에서의 제12조제2항에 따른 소관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제공 및 연계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의 제12조제3항에 따른 소관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제공 및 연계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이하 "보건소"라 한다)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④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은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제공 및 연계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신질환자를 관리하는 경우에 정신질환자 본인이나 제39조에 따른 보호의무자(이하 "보호의무자"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한다.
-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정신건강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단체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 ⑦ 시·도지사는 소관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의 운영 현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추진 내용을,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시·도지사를 통하여 소관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의 운영 현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추진 내용을 각각 반기별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17-1176호

인천도시관리계획(시설:녹지) 결정(변경) 입안(안) 열람 · 공고

인천도시관리계획(시설:녹지) 결정(변경) 입안(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열람 · 공고합니다.

2017. 9. 4.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주요 입안내용

가. 시설명 : 도시계획시설(녹지)

○ 위치 :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213-21번지 일원

○ 내용 : 도시계획시설(녹지) 결정(변경)

나. 입안사유

○ 인근 저유시설과의 차폐를 통한 도시경관향상을 위한 도시계획시설(녹지) 결정(변경)

다.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녹지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m ²)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	녹지	경관녹지	서구 원창동 213-21번지 일원	1,384	증) 131	1,515	2016.11.07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6-263)	

2) 도로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시 설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	녹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적 증가 - 1,384㎡ → 1,515㎡ 증) 1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흥주점 및 송유설비 부지 내 제척된 부지에 대하여 기존 경관녹지를 연장 설치하여 인근 저유 시설과의 차폐를 통한 도시경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관계도서 : 게재생략(열람장소에 비치)

3. 열람기간 및 의견제출 방법

1)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

2) 의견제출 : 상기 입안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열람장소 : 인천광역시서구청 도시개발과 (☎ 032-560-4762)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7-1185호

현무체육공원 조성공사 편입토지 손실보상계획 열람공고

우리 구(인천광역시 서구)에서 시행하는 「현무체육공원 조성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보상계획의 열람 등)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 하오니, 이의가 있는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께서는 열람 기간 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 9. 4.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사업의 개요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시행지	사업규모(㎡)	사업시행자	비고
현무체육공원 조성공사	2017년~2019년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774번지 일원	22,497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2. 보상계획

- 보상시기 : 감정평가 후 추후 개별통지
- 보상절차 : 보상계획열람공고 → 감정평가 → 보상금산정 → 보상협의(대면협의) → 소유권이전 및 보상금 지급 → 수용재결(협의불성립 시)
- 보상금 지급방법 : 은행계좌로 현금 송금
- 보상금 산정방법 : 2개 이상 감정평가기관 평가액의 산술평균치로 산정
- 토지소유자는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할 수 있으며,

-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려는 토지소유자는 보상 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여야 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 관련임]

3. 보상계획 열람기간 및 이의 신청

-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 2017. 09. 04 ~ 09. 19(15일간)
- 열람 및 이의신청 장소 : 인천광역시 서구청 공원녹지과 공원조성팀(560-4494)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 인천서구청 공원녹지과]
- 열람 및 이의신청 방법
 - 열람방법은 열람기간 중 토지 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여 본인임을 확인 받으신 후 열람장소에서 열람합니다.
 - 열람내용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와 관계인께서는 열람기간 동안 열람장소에서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여야 하며, 열람기간 동안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4. 보상대상 내역

- 토 지 :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산85-33번지 1필지
- 지장물 : 붙임 참조

5. 기타사항

- 협의절차 및 방법 등은 보상계획 공고 및 감정평가 완료 후 보상액이 산정되면 보상협의 요청서를 작성하여 협의기간, 협의장소 및 협의방법 등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 등 구체적인 사항을 개별적으로 통지할 예정입니다.
- 토지 소유자 및 관계인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토지소유자 부재나 거소불명으로 인하여 통지를 받지 못하신 분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서구청 공원녹지과(전화 560-449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편입조서 1부.
2. 이의신청서 1부. 끝.

토지조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현실적인 이용현황	전체면적 (㎡)	편입면적 (㎡)	용도지역 및 지구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명	소유자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	서구 마전동	산 85-33	임	경작지 임야	5,059	5,059	자연녹지지역	케이○글○벌 주식회사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경충대로 ○2○				

물건조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물건의 종류	구조	원면적 (㎡)	편입면적 (㎡)	용도지역 및 지구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명	소유자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	서구 마전동	686-130	임	활관측소	목조	1.9	1.9	자연녹지지역	인천광역시 현○정					
2	서구 마전동	686-130	전	컨테이너	철제	7.4	7.4	자연녹지지역	인천광역시 현○정					
3	서구 마전동	686-130 산85-33	임	건물 국궁장	철근콘크 리트	244.1	244.1	자연녹지지역	인천광역시 현○정				건물등기 102.3㎡	
4	서구 마전동	산85-33	임	창고	목조	22.2	22.2	자연녹지지역	인천광역시 현○정					

[붙임 2]

이의(추가조사 등)신청서

물건구분		물건번호	
------	--	------	--

□ 이의신청내역

소재지	물건의종류	보상 물건		비고 (연락처)
		현물건내역	이의신청 사항	

2017년 월 일

이의신청자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성 명 :

(인)

연락처(전화번호) :